

제4.7호

행정명령

**뉴욕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뉴욕주 전역의 재난 비상 사태 지속 선포**

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인력난이 발생하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**때문에,**

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심각한 인력난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을 올바르게 돌볼 수 있는 능력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**때문에,**

의료 시설이 제역할을 하려면 즉각적으로 직원을 충원해야 합니다. **그리고**

**이에 따라**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법 제2-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, 행정명령 4와 행정명령 4.6에 계속 명시된 주 재난 비상 사태를 2022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행정명령 4, 4.1, 4.2, 4.3, 4.4, 4.5, 4.6에 포함된 조건, 약관 및 효력 정지를 이어갑니다. 단,

- 행정명령 4.4에 포함된 공중보건법(Public Health Law) 3부 2895-b항과 공중보건법 1부 2828항의 적용 중단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.

2022년 3월 31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

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